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앞
발 신 :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담당 - 고승희 471-5346, 019-654-1610)

보도자료

미군작전 수행중 발생한 오발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위원회의 기만적 배상결정

1. 1998년 9월 10일에 미공군 군산기지 헌병대 전용 사격장에서 메드 테리상사 외 15명이 M-203 유탄발사기로 사격훈련을 하던 중 오발사고로 인해 유탄 1발이 김두일씨의 10cm나 되는 조립식가옥의 벽면을 관통하고 폭발한 사고가 있었다.

2. 사고 당일 김두일씨의 부인은 임신 9개월에 접어든 건강한 임산부였으나 사고시 폭발로 인해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고 김두일씨의 부인인 여순옥씨는 폭발의 굉음과 공포로 인하여 10일후 체중 2kg의 쌍둥이를 조산하게 되었다. 진단은 자녀 모두 미숙아로 판정되었으며 20여일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생활하였다.

3. 이에 김두일씨는 쌍둥이의 인큐베이터 사용비용을 포함한 요양비, 재산손실, 휴업배상, 위자료 가족이 당해야 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종합해서 국가배상을 신청하였다.

4. 그러나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가 신청한 국가배상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 891.550원만을 인정하고 그외의 국가배상에 대해 미숙아 출산이 유탄오발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없어 미군측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5. 이번의 국가배상결정은 자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하였다. 산부인과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조산아 출산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인과관계를 피해자에게 증명하라는 것은 법의 모순이다. 시민모임은 국가배상결정을 기만적 배상결정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여론을 조성하고 법적•제도적 방법 등 모든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6. 4월 23일 금요집회를 통해 미군사고와 범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미군사고와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미군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